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성 북 구
(문화체육과)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안 번호	161
----------	-----

제출년월일 : 2023년 9월 일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2023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3. 12. ~ 2024. 2.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 운영기간 : 2023. 12. 22.(금) ~ 2024. 2. 4.(일)
- 위탁내용
 - 눈썰매장, 가족눈놀이장, 아이스링크, 빙어잡기체험장, 체험학습장, 어린이 놀이기구,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 폐장 후 철거
 -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 인력 운용 등
 -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비용 : 680,000천원

-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실외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을 설치 및 운영한 수탁 또는 용역 실적(단일 건 기준 2억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
- 위탁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나.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 유도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나. 예산조치

- 제298회 임시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 : 총사업비 692,000천원
- 민간위탁금 : 680,000천원
 - 사무관리비 : 6,000천원
 - 행사운영비 : 6,000천원